0	ΛL	고	EO		
吉	겓	<b>6</b>	$\dashv$	_	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1255 호 2020. 9. 24.(목)

조례	
○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0호[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]	1
○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1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]·····	4
고 시	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163호[하천 점용 허가 고시]·····	10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164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······	11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168호[호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]·····	12
공 고	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069호[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]······	17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070호[울산광역시 북구 당시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	19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094호[공인 신규 등록 공고]·····	26
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	$\neg$
아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니 이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	
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	
회	
라 O 시 I O 시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	
발행 : <b>울산광역시북구</b>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	·)

2020. 9. 24.(목요일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전 (인)

2020년 9월 24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0호

#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

제1조(「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사기앙양을"을 "사기를 드높이기"로 한다.

제2조(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입방미터"를 "세제곱미터"로 한다.

제3조(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」의 개정)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"순화앙양"을 "순화"로 한다.

제4조(「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"미연에"를 "미리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

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 1. 개정이유

○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조례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여 순화할 수 있는 용어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(제1조)
  - 사기**앙양**을 → 사기를 드높이기
- 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(제2조)
  - <u>입방미터</u>  $\rightarrow$  <u>세제곱미터</u>
- 다.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(제3조)
  - 순화**앙양** → 순화
- 라.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(제4조)
  - 미연에 → 미리

##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전 (인)

2020년 9월 24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1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지역문화"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역사적·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, 문화예술, 생활문화,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·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.
- 2. "생활문화"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,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·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.
- 3. "문화예술"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주민의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・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문화 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  - 1.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
  - 2.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 - 3.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  - 4. 문화환경 취약대상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
  - 5.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  - 6.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수 있는 지역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역문화 진흥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전통문화 관련 활동사업
  - 2.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사업
  - 3.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·국외 교류 사업
  - 4. 지역문화 축제와 관련된 사업
  - 5.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사업
  - 6.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
- 제7조(생활문화 지원)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제공
  - 2.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
  - 3.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사업
  - 4.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
  - 5.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8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제6조,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9조(지역문화 진흥위원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
  - 2.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  - 3.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

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- 2. 지역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지역문화 관련 단체 · 기관의 대표
- 4. 지역문화업무 담당 국장
-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11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

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역문화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」는 폐지한다.

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 1. 개정이유

○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며, 지역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제3조)
- 다.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(제5조)
- 라. 지역문화 진흥 사업 등(제6조)
- 마. 생활문화 지원(제7조)
- 바. 지역문화 진흥위원회 구성 등(제9조 ~ 제14조)

공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- 163호

# 하천 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4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매 곡 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(매곡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점용)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신천동 745-35번지 외 2필지

나. 면적 : 영구 830 m²

5.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

영구: 2020. 9. 16. ~ 2049. 12. 31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- 164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4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판지2길 37	구유동 327 외 1필지	2020, 9, 24,	건축물 멸실
선시2절 37	(327-1)	2020. 9. 24.	신독한 현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**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<u>www.bukgu.go.kr</u>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<u>www.juso.go.kr</u>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20. 9. 24.**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 곳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168호

## 「호계1지구」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4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- 1. 사업명칭 : 호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
- 2. 사업시행자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- 3. 사업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-107번지 일원
- 4.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: 45필지, 11,058.0 m²
- 5. 지적확정조서 : 붙임참조
- 6. 문의처 :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(052-241-7586)

붙임: 지적확정조서 1부. 끝.

## 호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 조서

번호		종전	토지			확정	토지		면적증감(m²)		소유자	비고
인오   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m²)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m²)	[ 인식당점(III <i>)</i>	성명	주소	n  1/2/
	합 계	48필지		11,127.0		45필지		11,058.0	-69			
1	호계동	469	대	119	호계동	469	대	425.8	306.8	최*수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2	호계동	470	대	241	호계동	470	대	241		김*선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3	호계동	470-2	대	213	호계동	470-2	대	186.6	-26.4	주*엽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4	호계동	470-3	도로	29	호계동	470-3	도로	23.3	-5.7	김*선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5	호계동	471-1	대	324	호계동	471-1	대	280.4	-43.6	최*관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***	
6	호계동	471-2	대	555	호계동	471-2	대	487.7	-67.3	문*용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7	호계동	471-4	대	450	호계동	471-4	대	450		최*회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***	
8	호계동	471-5	대	50	호계동	471-5	대	63.8	13.8	문*용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9	호계동	471-6	대	21	호계동	471-6	대	30.5	9.5	문*용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
10	호계동	471-7	대	150	호계동	471-7	대	174.5	24.5	문*용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10	오게공	4/1-/	네 -	130	오세동	4/1-/	네	174.5	24.3	工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	출신성 탁시 국가 오세7설***	
11	호계동	472-5	전	2	-	-	-	말소	-2	최*수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말소
12	호계동	494-1	전	387	호계동	494-1	전	387		정*관	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244번길***	
13	호계동	495-1	전	569	호계동	495-1	전	569		최*수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14	호계동	495-2	대	106	호계동	495-2	대	106		최*철	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***	
15	호계동	495-3	대	255	호계동	495-3	대	236.1	-18.9	한*자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16	호계동	495-4	대	218	호계동	495-4	대	215.1	-2.9	한*자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17	호계동	495-5	대	420	호계동	495-5	대	420		최*철	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***	
18	호계동	496	대	367	호계동	496	대	352.1	-14.9	김*숙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19	호계동	497	대	269	호계동	497	대	269		최*수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20	호계동	497-1	대	157	호계동	497-1	대	155.4	-1.6	최*수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***	
21	호계동	498	전	744	호계동	498	전	480.6	-263.4	국(기획재정부)		
22	호계동	499	대	446	호계동	499	대	446		최*준(외 1명)	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평리길***	
23	호계동	543	대	199	호계동	543	대	199		김*자	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***	

24	호계동	543-1	전	271	호계동	543-1	전	271		김*자	울산광역시 보	남구 대공원로***	
25	호계동	544	대	208	호계동	544	대	208		김*자	울산광역시 '	남구 대공원로***	
26	호계동	545	전	169	호계동	545	전	169		최*철	울산광역시 축	중구 화합로***	
27	호계동	548-1	전	552	호계동	548-1	전	552		최*철	울산광역시 축	중구 화합로***	
28	호계동	548-2	대	317	호계동	548-2	대	378.6	61.6	최*수	울산광역시 분	북구 호계7길***	
29	호계동	936-99	대	93	호계동	936-99	대	189.1	96.1	울산광역시			
30	호계동	936-100	하천	45	호계동	936-100	하천	38.5	-6.5	울산광역시			
31	호계동	936-102	전	111	호계동	936-102	전	174.5	63.5	울산광역시			
32	호계동	936-103	전	341	호계동	936-103	전	226.6	-114.4	울산광역시			
33	호계동	936-104	대	320	-	-	_	말소	-320	울산광역시			말소
34	호계동	936-105	전	161	호계동	936-105	전	136.6	-24.4	울산광역시			
35	호계동	936-106	하천	42	호계동	936-106	하천	3.2	-38.8	국(국토교통부)			
36	호계동	936-107	대	156	호계동	936-107	대	180.9	24.9	강*이	울산광역시 극	북구 호계7길***	
37	호계동	936-108	전	29	호계동	936-108	전	19.7	-9.3	김*선	울산광역시 문	북구 호계7길***	

38	호계동	936-109	하천	10	호계동	936-109	하천	6.5	-3.5	국(국토교통부)			
39	호계동	936-154	하천	28	호계동	936-154	하천	50.9	22.9	국(국토교통부)			
40	호계동	936-155	하천	37	호계동	936-155	하천	57.3	20.3	국(국토교통부)			
41	호계동	936-266	하천	998	호계동	936-266	하천	937.8	-60.2	국(국토교통부)			
42	호계동	936-285	전	13	호계동	936-285	전	14.8	1.8	울산광역시			
43	호계동	936-313	도로	2	-	-	-	말소	-2	최*인	울산광역시	북구 호계7길***	말소
44	호계동	936-315	대	42	호계동	936-315	대	44.2	2.2	최*수	울산광역시	북구 호계7길***	
45	호계동	940	도로	807	호계동	940	도로	1,145.60	338.6	국(농림수산부)			
46	호계동	940-13	대	46	호계동	940-13	대	40.9	-5.1	김*선	울산광역시	북구 호계7길***	
47	호계동	940-14	도로	16	호계동	940-14	도로	9	-7	국(농림수산부)			
48	호계동	940-15	대	22	호계동	940-15	대	4.4	-17.6	주*엽	울산광역시	북구 호계7길***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- 1069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

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, '천곡재전길' 도로명 변경 신청 건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 2020년 9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- 1. 공고기간 : 2020. 9. 24. ~ 10. 8.(14일간)
- 2. 심의 결과 및 변경 내용
  - 가결('천곡재전길'을 '천곡제전길'로 변경)
    - 심의기간 : 2020. 9. 15. ~ 9. 16.(서면)
    - 위원 12명 중 찬성 8명, 반대 4명

OILH

-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3. 도로명 변경 절차

	도로명 변경 신	청		을 받은 부터	은 <b>주민 의견</b> 수렴 공고		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		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		4	심의 마친 날부터
주	소사용자의 5분의	1 신청	109	⇒ 일 이내	14일	이상	309	⇒ 일 이내	도로명주소	위원회 개최		⇒ 10일 이내
	공고 및 신청인 통보	공고	하	서면	동의를	받은 경	우		은 날로부터 생략 포함)	고시 및	신청	인 통보
	C8C 8T	날부		주소/	사용자의	1/2 01	상	⇒ 10일 이내		변경사항 !	및 변	년경기준일 -
	심의결과	309	길	서면동	의를 못	받은 경	병우	동의 민	료일부터	공고 및	신청	인 통보

주소사용자의 1/2 이하

#### 4. 기타사항

-변경내용 및 절차

○ 심의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 변경 신청서 접수일자(2020. 7. 27.)를 기준으로 한 '천곡재전길'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도로명이 최종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결과 통보

10일 이내

○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583)로 연락 바랍니다.

## < 도로명 변경 심의 결과 >

### □ 도로명 변경 조서

일련			도로	관할		도로구간				기초	
번호	구분	도 로 명	구분	행정구역	시작지점	끝지점	길이 (m)	폭 (m)	기초 간격 (m)	기소 번호	변경사유
	변경 전	천곡재전길	길	중산동 천곡동	중산동 808-10	천곡동 183-3	1399.591	3	21	1→138	'제전'이 저전리(楮田里)에서 기원
	변경 후	천곡제전길	길	중산동 천곡동	중산동 808-10	천곡동 183-3	1399.591	3	21	1→138	하였으므로 '천곡제전길'로 변경함

## □ 도로명 변경 도면

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- 1070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보

공

「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4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○ 불필요한 절차·비용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사항의 개정 권고에 따라,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개정내용
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내용 공증의무 규정 삭제(안 제6조제1항)
- 사용자 개별적 반환 사유 신설(안 제7조제2항제3호)

### 3. 관계법령

- ○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○「공증인법」제2조(공증인의 직무), 제57조(인증 방법)
- 「민사소송법」제356조(공문서의 진정의 추정), 제358조(사문서의 진정의 추정)
- 4. 개정조례안 및 신・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: 관광해양개발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 출 처
  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관광해양개발과
  - 2) 전화번호 : 052)241-7751, 팩스번호 : 052)241-7739

붙임 1.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2. 신·구조문 대비표
- 3. 관계법령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"를 "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협약체결 등)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<u>협약을 체결하여</u> <u>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</u> 한다.	협약을 체결하여
<u>② (생략)</u> <u>③ (생략)</u>	<u>② (현행과 같음)</u> <u>③ (현행과 같음)</u>
제7조(사용료의 징수 등) ① (생략)	제7조(사용료의 징수 등)①(현행과 <u>같음)</u>
<u>② (생략)</u> <u>1~2(생략)</u>	<u>② (현행과 같음)</u> <u>1~2(현행과 같음)</u>
3. <u>(신설)</u>	3. <u>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</u>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

제 1255 호

□「지방자치법」

##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보

④ 생략

## □「공증인법」

- 제2조(공증인의 직무)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(囑託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.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.
  - 1.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(私權)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(公正證書) 의 작성
  - 2. 사서증서(私署證書) 또는 전자문서등(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)에 대한 인증
  - 3.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
- 제57조(인증 방법)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.
  -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.
  -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, 삭제, 수정, 난외(欄外)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.
  -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
### □「민사소송법」

제356조(공문서의 진정의 추정)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.

-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.
-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58조(사문서의 진정의 추정)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(拇印)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.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

○ 의 견 제 출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	견	비고	
그네는 네ㅇ	찬성	반대	7	Ľ	UI 14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- 1094호

## 공 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」제9조에 따라 등록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4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 1. 등록 공인 내역

연번	공인명	등록사유	등록일자 (사용개시일)	인영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인	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에 따른 신규 개각	2020. 9. 24.		